

#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기관위원장
람	

제1533호 2020. 8. 3(월)

## 차 례

### 조 례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797호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 — 1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798호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  
----- 2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799호 인천광역시 서구 무형문화재 및 민속예술 전수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 ----- 9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800호 인천광역시 서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 11

###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39호 도시관리계획(도로:중로1-503호선)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고시 ----- 13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40호 도시관리계획(도로:소로1-311호선)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고시 ----- 17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41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 25

###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173호 도시계획시설(서곶근린공원) 수용재결 신청서류 열람 공고  
----- 29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186호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문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 30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198호 2020년 제2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및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공고 ----- 42

발행 : 인천광역시서구

편집 : 홍보정책과 [032-560-4146]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0년 8월 3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797호

###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가목 중 “기획예산실”을 “스마트에코시티추진단, 기획예산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0년 8월 3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798호

###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원연구단체 등록을 신청합니다.

1. 단체명칭 :
2. 설립목적 :
3. 의원연구단체 인적사항

소속 상임위원회	성 명	서 명	비 고

년 월 일

의원연구단체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 의원연구단체 변동사항 통보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원연구단체 변동사항을 통보합니다.

연구단체명		
변동의원	당초	의원
	변경	의원
변동일자	년 월 일	
변동사유		
기타		

년 월 일

의원연구단체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 연구활동계획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연구단체명			
연구내용		주 제	
		목 적	
연구활동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연구방법 및 세부연구계획		(별첨)	
연구 활동비	총 액	금	원(W 원)
	산출내역	(세부내역 별첨)	
기 타			

년 월 일

의원연구단체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 연구활동 심사결과 통보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아래 의원 연구단체의 ○○년도 ○○연구활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음을 통보합니다.

연구단체명		
대표자		의원
연구주제		
심사결과	내용	
	결과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장 (직인)

의원연구단체 대표자 귀하



[별지 제6호서식]

## 연구활동(중간·결과) 보고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년도 ○○연구활동(중간·결과)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연구단체명	
대표자	
연구주제	
연구목적	
연구방법	
연구내용 요약	
비고	

※ 붙임: 연구활동 세부결과보고서

년      월      일

의원연구단체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장 귀하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무형문화재 및 민속예술 전수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0년 8월 3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799호

### 인천광역시 서구 무형문화재 및 민속예술 전수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무형문화재 및 민속예술 전수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5년”을 “3년”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는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0년 8월 3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800호

인천광역시 서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취약계층을 말한다.

제4조 중 “같다) 등”을 “같다)”로 한다.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9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13조까지로 하며, 제16조를 제14조로 한다.

제11조(중전의 제13조)제4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다중이용시설의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 및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 설치
5. 다중이용시설의 오염도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20-139호

## 도시관리계획(도로: 중로1-503호선)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고시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9-244호(2019.12.23.)로 결정한 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도시계획시설 【도로명: 중로1-503호선, 사업명: 인천 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외도로(중로1-503호선) 개설공사】 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변경)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서구청(도시개발과 ☎560-4762)에 갖추어 두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20. 8. 3.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1.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조서

####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503	20 (20~24)	집산도로	673 (지구내:614, 지구외:59)	대2-61	대3-104	일반 도로	국고15-760 (15.10.27)	
변경	중로	1	503	20	집산도로	673	대2-61	대3-104	일반	국고15-760	일부구간

			(20~24)		(지구내:614, 지구외:59)		도로	(15.10.27)	선형변경
--	--	--	---------	--	----------------------	--	----	------------	------

○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결정(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1-503	중로1-5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부구간 선형변경</li> <li>- 연장 및 폭원 : 변경없음</li> <li>- 면적 : 1,933㎡→1,926㎡(감7㎡)</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분할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변경</li> </ul>

2.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 없음)

-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11-1번지 일원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 없음)

-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1-503호선)
- 명칭: 인천 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외도로(중로1-503호선) 개설공사

4.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변경)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	
					결정	금회	결정	기시행	금회		잔여
당초	도로	중로	1	503	20 (20~24)	20 (20~24)	673	-	59	614	1,933
변경	도로	소로	1	503	20 (20~24)	20 (20~24)	673	-	59	614	1,926

5.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 없음)

-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변창흠
- 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6.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변경)

- 기정: 실시계획 인가일 ~ 2020. 12. 31.
- 변경: 실시계획 인가일 ~ 2021. 03. 31.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 따로 붙임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사업명 : 인천 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외도로(중로1-503호선)  
개설공사

구분					면적(m <sup>2</sup> )		소유자		관계인		
연번	구분	법정동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소유자	소유자주소	관계인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합 계					6,872	1,926					
1	당초	서구 백석동	11-1	전	1,064	1,062	박*식	인천 남동구 구월동 *~**			
1	변경	서구 백석동	11-1	전	1,064	1,051	박*식	인천 남동구 구월동 *~**			
2	당초	서구 백석동	11-2	전	661	530	김*래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 은행마을태평아파트 ****~*****			
2	변경	서구 백석동	11-2	전	661	531	김*래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 은행마을태평아파트 ****~*****			
3	당초	서구 백석동	10	전	684	104	허*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로 **, ***동 ****호(검암동, 풍림아이원2차)	계양농업 협동조합	인천광역시 계양구 박촌동 ****~* (병방 지점)	근저당권
3	변경	서구 백석동	10	전	684	106	허*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로 **, ***동 ****호(검암동, 풍림아이원2차)	계양농업 협동조합	인천광역시 계양구 박촌동 ****~* (병방 지점)	근저당권
4	당초	서구 백석동	12	전	1,339	126	광산김씨 관공과 중친회	인천광역시 서구 독정로 ***~** (백석동)			
4	변경	서구 백석동	12	전	1,339	127	광산김씨 관공과 중친회	인천광역시 서구 독정로 ***~** (백석동)			
5	변경 없음	서구 백석동	13	도로	2,456	1	인천광역시				
6	변경 없음	서구 백석동	226-10	도로	668	110	국 (국토교통부)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20-140호

## 도시관리계획(도로: 소로1-311호선)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고시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8-97호(2018.7.23.)로 결정한 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도시계획시설 【도로명: 소로1-311호선, 사업명: 검단로 609번길 소1-311호선 도로개설공사】 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변경)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서구청(도시개발과 ☎560-4762)에 갖추어 두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20. 8. 3.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1.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조서

####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311	10	국지도로	340	중2-190	대곡동 산199-3	일반 도로	서구청 제2018-97호 (2018.07.23.)	
변경	소로	1	311	10*	국지도로	340	중2-190	대곡동	일반		일부구간

								산199-3	도로		선형변경
--	--	--	--	--	--	--	--	--------	----	--	------

\* : 도로 대표 폭원(변동없음)

○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결정(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1-311	소로1-3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부구간 선형변경</li> <li>- 연장 및 폭원 : 변경없음</li> <li>- 면적 : 4,125㎡→4,121㎡(감4㎡)</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형 및 도로개설 여건 등을 고려한 일부구가 선형변경</li> </ul>

2. 실시계획인가의 내용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 없음)

○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720-3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 없음)

○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1-311호선)

○ 명칭: 검단로 609번길 소1-311호선 도로개설공사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변경)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	
				결정	금회	결정	기시행	금회	잔여		
당초	도로	소로	1	311	10	10	340	-	340	-	4,125
변경	도로	소로	1	311	10	10	340	-	340	-	4,121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 없음)

- 성명: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서구청)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변경)

- 기정: 실시계획 인가일 ~ 2020. 12. 31.
- 변경: 실시계획 인가일 ~ 2021. 07.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 따로 붙임

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사업명 : 검단로 609번길 소1-311호선 도로개설공사(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소유자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주소	
1	변경없음	마전동	312-1	도	45	45	임인*	인천 서구 마전동**	
2	변경없음	마전동	159-6	임	10	10	배양*	인천 서구 서달로 **	
3	변경없음	마전동	159-4	임	379	379	총도김씨*	인천 서구 마전동**	
4	변경없음	마전동	159-5	도	937	937	김원*	고양군 벽제면 성석리 ****	
							김광*	고양군 벽제면 성석리 ****	
							김원*	고양군 중면 일산리 ****	
5	변경없음	마전동	727-4	도	160	160	국	국토교통부	
6	변경없음	마전동	727-5	도	43	43	국	국토교통부	
7	변경없음	마전동	290-19	도	3	3	공	인천광역시	
8	변경없음	마전동	416-40	구	5	5	국	농림축산식품부	
9	변경없음	마전동	313-3	도	52	52	박성*	김포 검단면 불로리**	
10	변경없음	마전동	312-3	도	27	27	공	인천광역시	
11	변경없음	마전동	321-18	도	30	30	임종*	인천 서구 마전리**	
12	변경없음	마전동	321-3	도	82	82	문상*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이종*	인천 강화 길상 온수리 ***.*	
							이종*	경기도 용인 기흥구 중동 ****	
							이종*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13	변경없음	마전동	321-29	도	11	11	문상*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이종*	인천 강화 길상 온수리 ***.*	
							이종*	경기도 용인 기흥구 중동 ****	
							이종*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소유자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주소	
1	변경없음	대곡동	720-16	임	353	353	김형*	인천 서구 검단로 **	
2	변경없음	대곡동	720-13	도	54	54	공	인천광역시 서구	
3	변경없음	대곡동	720-10	도	1	1	임병*	인천 서구 마전리	
4	변경없음	대곡동	729-1	도	45	45	국	국토교통부	
5	변경없음	대곡동	719-3	도	136	136	공	인천광역시 서구	
6	변경없음	대곡동	720-12	도	13	13	공	인천광역시 서구	
7	변경없음	대곡동	720-15	임	63	63	윤태*	인천 부평구 부평동**	
8	변경없음	대곡동	720-14	임	10	10	윤태*	인천 부평구 부평동**	
9	변경없음	대곡동	720-11	대	9	9	윤태*	인천 부평구 부평동**	
10	기정	대곡동	713-13	도	923	923	국	농림축산식품부	
	변경	대곡동	713-13	도	923	911	국	농림축산식품부	일부제척 (12㎡)
11	기정	대곡동	686-35	대	21	21	신묘*	인천 서구 대곡동 **	
	변경	-	-	-	-	-	-	-	제척
12	기정	대곡동	686-36	대	14	14	유일*	인천 서구 대곡동 **	
	변경	-	-	-	-	-	-	-	제척
13	기정	대곡동	713-10	도	6	6	국	농림축산식품부	
	변경	-	-	-	-	-	-	-	제척
14	기정	대곡동	709-9	구	17	17	국	농림축산식품부	
	변경	-	-	-	-	-	-	-	제척
15	변경없음	대곡동	700-8	도	598	598	국	농림축산식품부	
16	기정	대곡동	719-15	잡	1	1	송하*	서울 금천구 독산로 **	
	변경	-	-	-	-	-	-	-	제척
17	기정	대곡동	719-14	잡	2	2	송하*	서울 금천구 독산로 **	
	변경	-	-	-	-	-	-	-	제척
18	변경없음	대곡동	718-4	도	75	75	공	인천광역시 서구	
19	기정	-	-	-	-	-	-	-	
	변경	대곡동	729	도	48	3	국	국토교통부	신규
20	기정	-	-	-	-	-	-	-	
	변경	대곡동	720-9	임	8,765	59	김형*	인천 서구 검단로 **	신규
21	기정	-	-	-	-	-	-	-	
	변경	대곡동	700-7	도	4	2	국	농림축산식품부	신규
22	기정	-	-	-	-	-	-	-	
	변경	대곡동	713-1	도	41	1	국	농림축산식품부	신규
23	기정	-	-	-	-	-	-	-	
	변경	대곡동	720-6	도	10	4	공	인천광역시 서구	신규

##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조서

□ 사업명 : 검단로 609번길 소1-311호선 도로개설공사(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실제이용상황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변경없음	마전동	313-1	가건물	컨테이너	20㎡	창고	박성*	검단면 불로리 **			
				담장	가설판넬	15.0㎡	담장	박성*	검단면 불로리 **			
				대문	철재	1EA	대문	박성*	검단면 불로리 **			
2	변경없음	마전동	159-5	한전주	블로지 8628A 004	1주		한전 인천 지역 본부				

##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기정	대곡동	686-7	조경석	조경석	15.5㎡	조경용	유일*	서구 대곡동 **	김단농업협동조합	서구 검단로 **	근저당권
		“	686-7	조명 시설	-	5EA	조경용	유일*	서구 대곡동 **	김단농업협동조합	서구 검단로 **	근저당권
	변경	-	-	-	-	-	-	-	-	-	-	제척
2	변경 없음	대곡동	719-2	건물	블록조	11.2㎡	창고	송하*	서울시 금천구 독산로 **	주식회사 신한은행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	근저당권
		대곡동	719-2	가건물	천막+철골	80.8㎡	창고	송하*	서울시 금천구 독산로 **	주식회사 신한은행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	근저당권
		대곡동	719-2	담장	블록	96.5㎡	담장	송하*	서울시 금천구 독산로 **	주식회사 신한은행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	근저당권
		대곡동	719-2	기둥	벽돌	1EA	기둥	송하*	서울시 금천구 독산로 **	주식회사 신한은행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	근저당권
		대곡동	719-2	대문	철제	1EA	대문	송하*	서울시 금천구 독산로 **	주식회사 신한은행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	근저당권
		대곡동	719-2	목공 기계	-	1EA	-	송하*	서울시 금천구 독산로 **	주식회사 신한은행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	근저당권
		대곡동	719-2	집진 시설	-	1EA	-	송하*	서울시 금천구 독산로 **	주식회사 신한은행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	근저당권
		대곡동	719-2	물탱크	FRP	1EA	-	송하*	서울시 금천구 독산로 **	주식회사 신한은행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	근저당권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관계인		비 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3	변경 없음	대곡동	720-16	한전주	태정지 1G1	1주		한전 인천 지역 본부				보조	
4	변경 없음	대곡동	713-13	한전주	태정지 8628A 213	1주							
5	변경 없음	대곡동	713-13	한전주	태정지 8628A 214	1주							
6	변경 없음	대곡동	713-13	한전주	태정지 8628A 321	1주							
7	변경 없음	대곡동	700-8	한전주	태정지 8628A 331	1주							
8	변경 없음	대곡동	700-8	한전주	태정지 8628A 334	1주							
9	변경 없음	대곡동	700-8	한전주	태정지 8628A 241	1주							
10	변경 없음	대곡동	713-13	채신주	태정간 8M 우2	1주		KT					
11	변경 없음	대곡동	713-13	채신주	태정간 8M 우3	1주							
12	변경 없음	대곡동	713-13	채신주	F208R151 1-4	1주							
13	변경 없음	대곡동	700-8	채신주	06-11 F-14-20	1주							
14	변경 없음	대곡동	700-8	채신주	태정지3 8628A 331	1주		SK 텔레콤					
15	변경 없음	대곡동	700-8	채신주	C5011 2801 -2850	1주		KT					
16	변경 없음	대곡동	700-8	채신주	태정지 8628A 241	1주		SK 텔레콤					
17	변경 없음	대곡동	713-13	CCTV	742	1주		인천 서구청					
18	기정	대곡동	713-13	CCTV	-	1주		미상					
	변경	-	-	-	-	-	-	-	-	-	-	제척	
19	변경 없음	대곡동	700-8	CCTV	743	1주		인천 서구청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20-141호

##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8. 3.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부여·폐지 도로명주소 : 인천 서구 반월로 17-8 외 21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변경·폐지)사유	도 로 명 고 시 일	도 로 명 부 여 사 유
		별 도 열 램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0.08.03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 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고시일 : 2020-08-03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324-2	인천광역시 서구 반월로 17-8 (오류동)	20090922	반월이라는 옛 마을이름에서 유래	
2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324-5	인천광역시 서구 반월로 17-10 (오류동)	20090922	반월이라는 옛 마을이름에서 유래	
3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325-1	인천광역시 서구 반월로 17-13 (오류동)	20090922	반월이라는 옛 마을이름에서 유래	
4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324-3	인천광역시 서구 반월로 17-14 (오류동)	20090922	반월이라는 옛 마을이름에서 유래	
5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325	인천광역시 서구 반월로 17-15 (오류동)	20090922	반월이라는 옛 마을이름에서 유래	
6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324-1	인천광역시 서구 반월로 17-16 (오류동)	20090922	반월이라는 옛 마을이름에서 유래	
7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326	인천광역시 서구 반월로 17-17 (오류동)	20090922	반월이라는 옛 마을이름에서 유래	
8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322-5	인천광역시 서구 반월로 17-18 (오류동)	20090922	반월이라는 옛 마을이름에서 유래	
9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328-1	인천광역시 서구 반월로 17-19 (오류동)	20090922	반월이라는 옛 마을이름에서 유래	
10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328	인천광역시 서구 반월로 17-21 (오류동)	20090922	반월이라는 옛 마을이름에서 유래	
11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322-1	인천광역시 서구 반월로 17-23 (오류동)	20090922	반월이라는 옛 마을이름에서 유래	
12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322-4	인천광역시 서구 반월로 17-24 (오류동)	20090922	반월이라는 옛 마을이름에서 유래	
13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770-2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777번길 22 (불로동)	20081231	검단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7,77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4	인천광역시 서구 급곡동 596-7	인천광역시 서구 신동길 75 (급곡동)	20090922	신동이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15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725-1	인천광역시 서구 단봉로139번길 3-8 (오류동)	20090922	단봉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39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6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46-40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한내로161번길 4-12 (청라동)	20140804	청라국제도시 이미지 부각 및 청라한내로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61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7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46-32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한내로161번길 10 (청라동)	20140804	청라국제도시 이미지 부각 및 청라한내로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61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8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46-33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한내로161번길 8 (청라동)	20140804	청라국제도시 이미지 부각 및 청라한내로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61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9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8-13	인천광역시 서구 청서로16번길 28 (청라동)	20180827	청서로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60M 오른쪽으로 분기된 도로	
20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312-2	인천광역시 서구 반월로81번길 27 (오류동)	20200720	반월로 시점에서 810미터 지점에서 분기된 도로	
21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312	인천광역시 서구 반월로81번길 25 (오류동)	20200720	반월로 시점에서 810미터 지점에서 분기한 도로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변경 고시조서

고시일 : 2020-08-03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변경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1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372-2	인천광역시 서구 경명대로263번안길 36 (경서동)	인천광역시 서구 금산로 42 (경서동)	도로구간 변경	20200629	도로전행방향에 금선이 위치하고 있어 금선로라 명명함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0-1173호

## 도시계획시설 (서곶근린공원) 수용재결 신청서류 열람 공고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8-169호(2018.7.16.)로 사업시행인가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서곶근린공원) 사업구역 내 편입되어 있는 토지 등에 대한 수용재결 신청 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토지 등 소유자는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7. 28.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사 업 명: 서곶근린공원 조성사업
2. 사 업 위 치: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산20번지 일원
3. 사업 시행자: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4. 서류의 종류 및 명칭: 별첨 「수용재결신청서 및 관계서류」 참조
5.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2020. 7. 28. ~ 2020. 8. 12. (14일 이상)
6. 열람장소 및 방법: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299 4층 공원녹지과 방문  
또는 전화(☎032-560-4494)
7. 열 랐 서 류: 별첨 「수용재결신청서 및 관계서류」 참조
8. 기 타: 관계서류는 서구청 공원녹지과(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299)에 비치하고 있으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0 - 1186호

##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문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문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 8. 3.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1. 개정이유

-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음식문화거리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시 포함하여야 할 사항 [안 제2조]
- 음식문화거리 지정에 관한 심의 기준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음식문화거리 지정 절차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3. 의견제출

-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8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위생과, 전화 560-4322, 팩스 560-275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문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

###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음식문화거리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시 포함하여야 할 사항 [안 제2조]
- 나. 음식문화거리 지정을 위한 심의 기준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다. 음식문화거리 지정 절차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 참조
- 나.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 다. 예산수반사항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2020년 8월 중
  - (2)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 (3) 성별영향평가 실시: 2020년 8월 중
  - (4) 부패영향평가 실시: 2020년 8월 중
  - (5) 관련부서: 환경안전국 위생과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 호

## 인천광역시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행계획 수립)**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음식문화거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2. 사업의 목표 및 추진계획
3. 관련 자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음식문화거리 지원,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3조(음식문화거리 지정 및 심의)**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음식문화거리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단체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문화거리 지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문화거리 지정 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조례 제10조에 따른 심의를 거쳐 음식문화거리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음식문화거리 지정 심의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④ 구청장은 음식문화거리 지정 신청을 한 상인단체 대표자에게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음식문화거리로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음식문화거리 지정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음식문화거리 지정 심의기준 (제3조제3항 관련)

### 항목별 기준

항 목	심 의 기 준	배 점
음식점 30개소 이상 집단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정지구에 소재한 음식점은 30개소 이상 집단화가 이루어져 있어야 한다.</li> <li>- 30개소 이상 : 16점</li> <li>- 40개소 이상 : 18점</li> <li>- 50개소 이상 : 20점</li> </ul>	20
자치기구 (상인단체) 구성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할 구청 또는 세무서에 등록된 번영회, 상인단체 등 자치기구가 있다.</li> <li>- 운영기간 1년 미만 또는 미등록 : 6점</li> <li>- 운영기간 1년 이상 : 8점</li> <li>- 운영기간 2년 이상 : 10점</li> </ul>	10
상인단체 등록 음식점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인단체 등록 음식점 수는 30개소 이상이어야 한다.</li> <li>- 30개소 이상 : 6점</li> <li>- 40개소 이상 : 8점</li> <li>- 50개소 이상 : 10점</li> </ul>	10
음식문화거리 신청 동의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정지구 거리 상인회의 3분의 2이상 동의가 있어야 한다.</li> </ul>	10
거리의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리는 쾌적하고,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다.</li> </ul>	10
거리의 특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리를 대표할 수 특화된 음식이 있다.</li> </ul>	10
음식문화거리 활성화 계획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전한 음식 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내용 및 사회 공헌, 주민의 이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li> </ul>	
	가. 국가 정책에 따른 건전한 음식문화 조성 방안의 적정성	10
	나. 주민의 이용도를 높일 수 있는 자체 계획 수립 여부	10
	다. 주민 친화 및 사회 공헌 방안의 적정성	10
		30

비고. “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말한다.

### 심의 기준

- 항목별 득점비율은 60% 이상 이어야 한다.
- 심사자의 전체평균이 80점 이상 이어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 음식문화거리 지정 신청서

신청인 (상인단체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남, 여)
	주 소		전화번호	
	단체명			

  

신청사항	음식문화거리명	
	위 치(소재지)	
	예정지구 거리 음식점 수	
	예정지구 거리 상인 수	
	신청 동의한 상인 수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상인단체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제출서류

1.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2. 상인단체 동의서(사업비 자부담 동의 여부 포함)
3. 상인단체의 회칙(정관) 및 명부(업종, 업소명 포함)
4. 음식문화거리 예정 위치도(입구 점포 및 출구 점포 표시 및 직선거리 기재, 음식점 위치 표시)
5. 음식문화거리 활성화 계획서(신청 배경 및 목적, 활성화 계획 등 서술)

[별지 제2호서식]

음식문화거리 지정 관리대장			
거 리 명		신청당시 업소수	
위 치 (소재지)			
지정일자		지정번호	
상인단체 대표자명		전화번호	
기 타 (변동·참고사항)			
음식문화거리 사진			

## 관 계 법 령 발 취 서

### □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 관내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는 거리를 음식문화거리로 지정 및 조성하여 건전한 음식문화개선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인” 및 “점포”란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상인” 및 “점포”를 말한다.
2. “상인단체”란 상권이 형성된 일정 지역에서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율적으로 설립한 조직으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음식문화거리”란 일정 지역 내에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는 거리로써, 건전하고 위생적인 음식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거리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음식문화거리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상인단체의 책무)** 상인단체는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구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구청장은 음식문화거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음식문화거리 지정)** ① 음식문화거리는 구청장이 관내 일정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음식문화거리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곳을 선정하여 지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음식문화거리를 지정할 때에는 거리환경 및 시설, 거리의 역사성, 시민의 이용도,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음식문화거리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내용을 구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지정기준 등)** ① 음식문화거리는 일정 지역에 소재한 음식점(「[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말한다)이 30개 이상 집단화를 이루어야하며, 제2조제2호에 따른 상인단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 충족여부 및 사실 확인을 위하여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조사 등을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제8조(지정신청 및 취소)** ① 상인단체를 대표하는 자가 제6조에 따른 음식문화거리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문화거리 지정신청서
2. 해당 예정지구 거리의 상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3. 상인단체의 명부 및 회칙 또는 정관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구청장은 지정된 음식문화거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음식문화거리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2. 심각한 위생, 품질 등 관리 소홀로 인하여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경우
3. 구청장이 음식문화거리의 지정을 취소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음식문화거리 지정을 받은 경우

**제9조(사업의 지원)** ① 구청장은 지정된 음식문화거리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시설, 고객 편의시설의 설치 등 고객 접근성 향상 및 환경개선사업
2.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사업
3. 축제 및 음식문화거리 활성화 등을 위한 홍보사업
4. 종합적인 지원계획에 따른 평가에서 선정된 업소의 종합컨설팅
5. 상인 대상 교육사업
6. 그 밖에 음식문화거리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때에는 상인단체의 사업계획서를 제

출발아 예산의 규모, 상인의 자부담 조달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심의)** 구청장은 음식문화거리 지정 및 지정취소, 사업의 지원 등을 하고자 할 경우 「인천광역시 서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서구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음식문화거리 지정 및 지정취소, 사업의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업비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음식문화거리 지정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음식문화특화거리로 지정된 맛고을길 및 검단먹거리타운에 대해서는 이 조례 따라 지정된 음식문화거리로 본다.

# 의 건 수 령 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 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 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와 이익 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기타 문제점		
실·국(군·구)별 의견			
협약개요	실·국별	제 출 의 건	검 토 내 용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0-1198호

## 2020년 제2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및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공고

우리 구 관내 공동주택단지(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도시환경을 정비하고자 『2020년도 제2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및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공고하오니 관내 입주자 여러분께서는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8. 3.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I.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

#### □ 신청 대상 및 내용

- 지원대상 : 관내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 단지 중  
사용검사일 기준 10년 이상 경과된 단지(2009.12.31.  
이전 준공건축물)
- 지원대상 사업내용
  - 단지 내 도로 및 그 부속시설 관리, 유지보수
  - 어린이놀이터 보수, 경로당 보수, 상·하수도 시설 관리 등
  - 범죄예방을 위한 무인택배함, 방범용 CCTV설치(단지 내)
  - 안전등급기준 D등급(미흡) 또는 E등급(불량)을 받아 긴급한 보수·보강이필요한 시설

-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보수 등
- ※ 모든 수혜사업은 향후 10년 이내 동종사업에 지원하지 않음.

- 신청기간 : 2020. 8. 3.(월) ~ 8. 14.(금)
- 신청장소 : 서구청 주택과 주택관리팀(☎ 560-4738, 4737)
- 신청자 :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장 또는 공동주택 소유자 대표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오셔야 하며, 불가피할 경우 대리인 위임장 및 신분증(대리인)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서구청 홈페이지 확인 또는 주택과, 각 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요망)

-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및 회의록 사본 1부 또는 입주자 동의서 1부
- 공사비 산출도서 : 견적서 등 공사비 산출 근거자료

※ 견적서 등 산출근거자료는 업체별 1부씩 총 3부 필히 첨부 (동일한 견적조건으로 산출비교 가능해야 함)

□ 지원규모

- 연간 보조금 지원 상한금액(인천광역시서구 지원조례 시행규칙 별표1)

총사업비	지원 기준		비 고
	의무관리 전 액	임의관리 전 액	
7백만원 이하			
7백만원 초과 ~ 2천만원이하	총사업비 x 75/100범위내	총사업비 x 85/100범위내	
2천만원 초과 ~ 3천만원이하	총사업비 x 70/100범위내	총사업비 x 80/100범위내	
3천만원 초과 ~ 4천만원이하	총사업비 x 65/100범위내	총사업비 x 75/100범위내	
4천만원 초과 ~ 5천만원이하	총사업비 x 60/100범위내	총사업비 x 70/100범위내	

※ 총사업비가 5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단지별 보조금은 의무관리 단지는 3천만원, 임의관리 단지는 3천5백만원으로 한다.

※ 공동주택 관리대상 구분

- 의무관리 : 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사용 공동주택
- 임의관리 : 의무관리가 아닌 소규모 공동주택

#### □ 지원절차 및 향후일정

① 지원신청 ⇒ ② 현장조사(관련부서, 주택관리사협회) 및 타당성 검토 ⇒ (8.3. ~ 8.14.) (8월중)

③ 심의위원회 개최 ⇒ ④ 지원대상사업 결정 ⇒ ⑤ 사업시행 ⇒ ⑥ 보조금 교부신청 ⇒ (9월중) (9월중) (9월 ~ 10월) (공사완료 후)

⑦ 현장확인 및 보조금 교부 ⇒ ⑧ 정산서 제출

※ 보조금 교부는 사업시행 완료에 따라 단계별 지급 예정이며, 사업진행 사정상 일정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 신청 시 유의사항

- 총사업비 대비 조례에 따른 지원금액 상한기준에 의거 지원금이 지급되므로 입주민 자체부담금의 조달방안, 사업참여 여부, 사업우선 순위 등을 입주민 의견수렴 결과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 의결 사항 등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사업 결정 후, 사업 미시행시 타 신청단지에서 보조금 지원 수혜를 받지 못할 수 있고, 추후 사업신청 시 사업 우선순위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사업신청 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수혜대상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10년 이내 동종사업에 지원할 수 없으며, 지원대상사업 결정통지 전 공사를 시행한 단지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제1차 지원사업 미선정 단지는 별도의 추가 신청 없이 기 신청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II.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 관리대상 : 관내 소규모 공동주택(임의관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 중 사용검사일 기준 20년 이상 경과된 단지 (1999.12.31. 이전 준공)
- 선정방법 : 관리대상 중 노후도 및 준공년도 등을 감안하여 단지 선정
- 사업내용 : 공동주택 안전점검,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등
- 신청기간 : 2020. 8. 3.(월) ~ 8. 14.(금)
- 신청장소 : 서구청 주택과 주택관리팀 (☎ 560-4738, 4737)
- 신청자 :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입주자 대표
- 구비서류(서구청 홈페이지 확인 또는 주택과, 각 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요망)
  -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신청서 1부
  - 현장사진 및 입주자등 동의서류(소유자, 거주자 현황 포함)
- 절차 및 일정
  - ① 신청 ⇒ ② 현장조사, 타당성 검토 ⇒ ③ 심의위원회 개최, 대상단지 선정 ⇒ (8.3. ~ 8.14.) (8월) (9월 중)
  - ④ 업무위탁기관 참여요청 및 계약 ⇒ ⑤ 안전점검 실시 ⇒ ⑥ 점검완료 및 통보 (9월) (10월) (11월)
- 신청 시 유의사항
  - 안전점검 결과 보수가 필요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에서 자체 실시하여야 하므로 향후 자체부담금 조달방안에 대하여 입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 및 회의 등을 거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